

#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3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의 대상자를 확대하고, 피해자 지원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피해자등”의 뜻을 규정함.(안 제2조제4호 신설)
-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근거를 규정함.(안 제8조 신설)
- 조문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등”으로 변경하고, 오기된 인용 조번호를 정정하며,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.(안 제12조 삭제).

#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피해자를”을 “피해자등을”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피해자 지원”을 “피해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“피해자”를 각각 “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, 제4호 및 제6호 중 “피해자”를 각각 “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 중 “제7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)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

안 제9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등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톡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톡킹범죄를 예방하고 <u>피해자</u>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피해자등</u> 을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톡킹범죄 예방 및 <u>피해자</u>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스톡킹범죄 <u>피해자</u>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피해지</u> 원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 --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수정안
<p>5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<u>피해자</u>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5조(신고체계의 마련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 <u>피해자</u>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사업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<u>피해자</u>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스토킹범죄 <u>피해자</u> 심리상담 지원사업</p> <p>4. 스토킹범죄 <u>피해자</u> 법률상담 지원사업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<u>피해자</u> 보호·지원을 위하여</p>	<p>5. ----- 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 ----- 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신고체계의 마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피해자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사업) ① ----- 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</p>

현행	수정안
<p>필요한 사업</p> <p>제7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<u>제7조</u>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8조(협력체계 구축) ①</u>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<u>피해자</u>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제9조·제10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1조(비밀 준수의 의무)</u>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<u>피해자</u>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</p>	<p>-----</p> <p>제7조(예산의 지원) ----- <u>제6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)</u> 시장은 <u>피해자</u> 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<u>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</u> 할 수 있다.</p> <p><u>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</u> -----</p> <p>----- <u>피해자등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·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 <p><u>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피해자등</u> 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수정안
<p>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<u>제12조(피해자의 의사 존중 의무)</u></p> <p><u>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##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 행위”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.

가.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
나.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(이하 “주거 등”이라 한다)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
다.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(이하 “물건 등”이라 한다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
라.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

마.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

2. “스토킹범죄”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피해자”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.

4. “피해자등”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·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신고체계의 마련)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



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실태조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2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
3.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
4.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
5.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7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)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·협력 등의 업무

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